

예산총칙

제1조 2026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7,680,905,471	230,427,164
일반 회 계		6,271,066,771	188,132,003
특별 회 계		1,409,838,700	42,295,161
공 기 업 특 별 회 계	공 기 업 특 별 회 계	341,859,318	10,255,780
	① 상 수 도 사 업	147,426,513	4,422,795
	② 하 수 도 사 업	194,432,805	5,832,984
	기 타 특 별 회 계	1,067,979,382	32,039,381
	① 의 료 급 여 기 금	461,325,300	13,839,759
	② 수 질 개 선	9,356,029	280,681
	③ 풍 영 정 천 유 지 용 수 공 급 사 업	531,400	15,942
	④ 도 시 개 발	372,135	11,164
	⑤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	525,101	15,753
	⑥ 택 지 개 발 사 업	576,949	17,308
	⑦ 교 통 사 업	26,628,896	798,867
	⑧ 광 역 교 통 시 설	5,879,840	176,395
	⑨ 학 교 용 지 부 담 금	18,343,927	550,318
	⑩ 산 업 단 지	1,967,046	59,011
	⑪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80,314,638	2,409,439
	⑫ 도 시 철 도 사 업	230,346,030	6,910,381
	⑬ 소 방	231,812,091	6,954,363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“계속비사업(변경)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“8,487,808천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“304,9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8조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